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894
------------	-----

2019년 8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7일, 이승미 의원 외 10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8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승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일부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공공자전거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에 관해 규정함(안 12조의3제2항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8. 19 ~ 2019. 8. 26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원안동의
 - 소상공인 카드 결제수수료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및 공공자전거 할인요금 적용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 이용자를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시 50% 범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인 공공자전거요금 감면 정책도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결제수단 다양화 및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음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87회 정례회 당시 「서울 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포함한 18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시 일정금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참고]

- 다만, 서울시 자료¹⁾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따릉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15년 3억 73백만원을 시작으로 '18년 99억 8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따릉이 4만대 확보를 위한 양적 확대에 의한 운영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이기는 하나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최대 50% 감면할 경우 공공자전거 운영 적자폭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요금감면 혜택이 각 조례에 따라 적게는 5%에서 최대 30% 범위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율을 최대 50%로 규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동 조례는 이용요금 감면기간을 2019년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조례 개정 이후에 시스템 구축 기간 및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용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공공자전거 운영간 적자규모(운영비용 - 운영수입)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비용	450	3,352	6,975	15,806
운영수입	77	1,003	3,094	5,826
적자	373	2,349	3,881	9,980

※ 2015년~2017년 집행기준이며, 2018년은 예산편성기준임

[별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 서울시 감면 조례

연번	구분	조례명	감면대상	감면율
1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사용료: 10% 수강료: 5%
2	조례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등 입장료, 공원시설 이용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이용료: 10%
3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4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조례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시설 대관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6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교양 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 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7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8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 제작 비용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9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 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0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1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2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등 강습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3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 강료 및 강당, 교실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4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5	조례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 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6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및 서울영어마 을 수유 관악캠프 이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7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 장지)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8	조례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7.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다.</p>